

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24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6. 13.
제출자 : 달성군수

1. 제안이유

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「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」 특례보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특례보증대상 제외규정 중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규정 삭제(안 제8조제2항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 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4. 5. 13. ~ 6. 2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(이하‘군“이라 한다) 지역내에서”를 “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지역 내에서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소상공인지원계획을”를 “소상공인 지원계획을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경영혁신과”를 “경영혁신과”로 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이행 하여야 한다.”를 “이행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적용특례)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“창업”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‘군’이라 한다) 지역내 <u>에서</u>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. 3. ~ 6. (생 략)	제2조(정의)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지역 내 <u>에서</u> ----- ----- 3. ~ 6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소상공인 지원계획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, 성장기반 조성 및 디지털 경영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<u>소상공인지원계획을</u> 수립할 수 있다. ② 소상공인은 <u>경영혁신과</u> 지역사회 공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군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	제4조(소상공인 지원계획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소상공인 지원계획을</u> ----- --- ② ----- <u>경영혁신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제7조(특례보증 지원) ① ~ ③ (생략)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 ⑤ (생략)	제7조(특례보증 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<u>이</u> 행하여야 한다. ⑤ (현행과 같음)
제8조(특례보증대상) ① (생략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보증대상에서 제외한다. 1. <u>국가, 대구광역시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</u>을 지원받은 경우 2. ~ 3. (생략)	제8조(특례보증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1. <삭제> 2. ~ 3. (현행과 같음)

□ 소상공인기본법 [시행 2021. 3. 9.] (법률 제17623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)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